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00
----------	-------

발의연월일 : 2026. 8. 26.

발 의 자 : 신성범 · 조은희 · 서천호

김위상 · 최수진 · 송석준

김예지 · 안철수 · 박덕흠

박성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인구’의 범위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사람을 포함함.

그런데 최근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단기 취업 외국인(C-4비자 등)은 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신고 의무가 없어 생활인구 통계에서 제외됨. 한편, 우리나라 농·어업 분야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단기 취업 외국인들에 대한 체류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 또는 제조업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을 생활인구 범위에 포함시키고,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를 “다음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3) 농·어업 또는 제조업 분야에 취업을 목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의2.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 주민의 현황 조사, 주거 안정 및 지역 공동체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외국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에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지원센터(이하 “외국인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인지원센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다국어 통·번역, 한국어 교육 및 문화적응 프로그램 운영
2. 주거·의료·교육 서비스의 연계
3. 산업안전 및 생활 관련 정보 제공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외국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1의2. (생 략)	1. 1의2. (현행과 같음)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 ----- -----.
가. 나. (생 략)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외국인 중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u> 해당하는 사람	다. ----- <u>다음 어느 하나에</u> ----- -----
<u><신 설></u>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u><신 설></u>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사람
<u><신 설></u>	3) 농·어업 또는 제조업 분야에 취업을 목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제6조(시·군·구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생략)

② 시·군·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
하여야 한다.

1. ~ 8. (생략)

<신설>

9. (생략)

③ ~ ⑦ (생략)

<신설>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사
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시·군·구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
주민의 현황 조사, 주거 안정
및 지역 공동체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9.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외국인지원센터의 설
치·운영) ①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
역에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
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지원센
터(이하 “외국인지원센터”라 한
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인지원센터는 설립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다국어 통·번역, 한국어 교육 및 문화적응 프로그램 운영

2. 주거·의료·교육 서비스의 연계

3. 산업안전 및 생활 관련 정보 제공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외국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